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1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6.

발의자 : 백종현 · 강기윤 · 김미애
정동만 · 이종성 · 한무경
이현승 · 박정하 · 강대식
이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·조사할 수 있음.

하지만,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).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제출”을 “제출(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검역조사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<u>제출</u>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·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제15조(검역조치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12조(검역조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제출(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검역조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</p>

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
조를 요청할 수 있다.